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선우 의원 외 5명

2. 제안이유

- 구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책무(안 제1조~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지원사업, 복지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8조)
-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5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평생교육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기 타 : 조례안 예고(2020. 9. 1. ~ 9. 7.) 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구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임.
- 2020. 7월말 기준 관내 등록장애인은 16,654명이며, 그 중 발달장애인은 총 2,091명(지적 1,840, 자폐성 251)으로 구미시 인구대비 4%, 전체 장애인의 12.6%를 차지하고 있음.

< 도내 타 시의 발달장애인 현황 >

(2020.7월 기준)

(단위: 명)

구 분	전체 장애인	발달장애인	비율(%)	비 고
구 미	16,654	2,091	12.6	
경 산	14,577	1,809	12.4	
안 동	13,860	1,558	11.2	
영 주	8,354	842	10.1	
김 천	11,032	1,092	9.9	
영 천	8,292	820	9.9	
포 향	27,395	2,541	9.2	
경 주	16,563	1,412	8.5	
상 주	9,474	792	8.3	
문 경	6,665	509	7.6	

○ 검토 결과,

- 발달장애인은 전체 등록장애인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타인의 도움없이 영위하기가 어려워 평생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상생활은 물론 교육, 경제활동 등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 생애에 걸쳐 지원이 필요하나 복지 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부족해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등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발달장애인 직업 훈련이나 평생교육 등 능력계발을 위한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임.
- 또한 발달장애인은 인지력·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여 자기결정, 자기권리 주장이나 자기보호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학대·무시·인권침해·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됨.
- 상위 법령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직접적인 위임근거는 없으나,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우리시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관련 정책을 선제적·적극적·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근거법의 취지에 맞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 차원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사업의 추진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